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6-41호

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503호(2009.12.10.)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2017.12.29.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98호(2018.06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30호(2019.04.25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98호(2020.09.24.)로 재정비촉진 계획변경 결정·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-42호(2021.03.04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하고, 같은고시 제2025-89호(2025.06.26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한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하고, 같은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2월 26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32-19번지 일대

다. 정비구역의 면적 : 73,068㎡

라. 사업시행자의 명칭 :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노해관)

마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6, 2층

바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6. 02. 25.

사. 관리처분인가의 내용

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구 분		대지면적(㎡)	동 수	층 수	세대수	건축연면적(㎡)
공동 주택	소 계	41,994.4301㎡	16동		1,012세대	163,145.9217㎡
	분 양	36,899.9701㎡	12동	1층~30층	838세대	145,102.4234㎡
	임 대	5,094.4600㎡	4동	1층~14층	174세대	18,043.4983㎡
상 가		2,206.5699㎡	주택에 포함	지하1층~지상2층	161호	8,572.3957㎡

2) 토지이용계획

총계 (㎡)	택 지(㎡)				정비기반시설 등(㎡)				
	소계	공동 주택	단독 주택	그 밖의 건축시설	소계	도로	공원	체육 시설	학교
73,068.00	44,201.00	41,994.4301	-	2,206.5699	28,867.00	13,505.0 0	3,188.0 0	97.00	12,077.0 0

3)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 대상 (㎡)	주택규모별(전용면적 기준) 공급세대수														상가 면적 (㎡)
	계	36 ㎡	43 ㎡	52 ㎡	59 ㎡A	59 ㎡B	59 ㎡C	84 ㎡A	84 ㎡B	84 ㎡C	84 ㎡D	84 ㎡E	84 ㎡F	107 ㎡	
계	1,012	80	74	20	55	95	48	90	67	107	44	12	123	197	8,572.3957
조합원	610	-	-	-	55	35	44	88	34	84	44	9	24	193	-
보류 시설	16	-	-	-	-	3	1	2	1	1	-	1	3	4	-
일반 분양	212	-	-	-	-	57	3	-	32	22	-	2	96	-	-
임대	174	80	74	20	-	-	-	-	-	-	-	-	-	-	-

※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상가 동·호수 배정 결과에 의해 개별 분양가격을 확정한다.

※ 관련 법령에 부적합한 분양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, 향후 관리처분계획(분양계획) 변경 될수 있음.

4)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

구 분 (㎡)	신 설(㎡)											용도폐지 (㎡)	
	도로								공원	체육 시설	학교	도 로	구 거
	대로 3류18	중로 2류6	중로 3류A	중로 3류35	중로 3류36	소로 1류4	소로 2류4	소로 3류6					
구 모	3,024. 0	2,169. 0	1,672. 0	1,426. 0	3,210. 0	1,035. 0	969.0	0	3,188.0	97.0	12,077. 0	533 1	42

5)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

- 최초 이주 개시 공고 : 2026년 7월

- 철거 예정 : 2027년 9월

※ 상기 이주 및 철거 예정 시기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음.